

■ 최신 해외정보 - 캄보디아 ■

금융신탁업(Financial Trusts)에 대한 규제(재경부, 2013년 8월 26일)

캄보디아 정부는 2013년 8월 26일 금융신탁업 규제에 관한 시행령(Sub-Decree No. 476 on Financial Trusts)을 발표하여, 앞으로 위 시행령에 따라 캄보디아 재경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은행업 또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(이하 '금융신탁업자')를 감독, 관리할 것임을 공표하였습니다. 위 시행령은 금융신탁업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, 위 시행령에 따라 향후 캄보디아에서 금융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캄보디아 재경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고, 기존 금융신탁업자도 위 2013년 8월 26일부터 6개월 내 캄보디아 재경부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주거용 부동산 판매업자에 대한 과세(재경부, 2013년 10월 9일)

캄보디아 국세청은, 캄보디아 재경부 부령(Circular No. 1728)에 따라 주택단지, 단독주택 및 빌라 등(이하 '주거용 부동산') 판매업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매수인으로부터 원래 받고자 했던 가격의 10%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실제 매도가격을 정하여야 하고, 매달 실제 이루어진 거래의 매도가격의 1% 상당의 매출세를 세무당국에 선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만일 주거용 부동산 판매업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실제 수익을 조사하여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. 이번에 공표한 재경부령은 그간 주택분양사업에서 논란이 된 매출부가치세와 매출 선납세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습니다. 한편, 캄보디아 재경부는 2009년도 12월 주택개발 및 판매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등록업무를 규정한 「주택개발관리에 대한 시행령」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.